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マイ플랜저축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만기	납기	남자	여자	최저보험료	
5년만기	3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50만원	
7년만기	3년납	만 15세 ~ 56세	만 15세 ~ 66세	40만원	
	5년납	만 15세 ~ 52세	만 15세 ~ 62세	30만원	
	전기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50만원	
10년만기	3년납	만 15세 ~ 48세	만 15세 ~ 59세	30만원	
	5년납	만 15세 ~ 64세	만 15세 ~ 70세	15만원	
	7년납	만 15세 ~ 68세			
	10년납	만 15세 ~ 67세			
15년만기	3년납	만 15세 ~ 57세	만 15세 ~ 65세	20만원	
	5년납	만 15세 ~ 68세	만 15세 ~ 70세		
	7, 10, 12년납, 전기납	만 15세 ~ 70세			
20년만기	3년납	만 15세 ~ 57세	만 15세 ~ 64세	15만원	
	5년납	만 15세 ~ 66세	만 15세 ~ 70세		
	7, 10, 12, 15년납, 전기납	만 15세 ~ 70세			
30년만기	3년납	만 15세 ~ 53세	만 15세 ~ 59세	15만원	
	5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7년납	만 15세 ~ 63세	만 15세 ~ 67세		
	10년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70세		
	12년납	만 15세 ~ 67세			
	15년납	만 15세 ~ 68세			
	20년납, 전기납	만 15세 ~ 70세			

3.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만기	납기	가입한도
5년만기	3년납	월 보험료 50만원 이상
	전기납	
7년만기	3년납	월 보험료 40만원 이상
	5년납	
	3년납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10년만기	전기납	
	기타	월 보험료 15만원 이상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매회 10만원 이상)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begin{aligned} &= \text{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 200\% \times \text{가입경과년수} \\ &\quad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end{aligned}$$

- 3) ‘2)’에서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 한도로 한다.
-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한도를 적용한다.

6. 계약자격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계약자격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당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격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계약자격립금의 중도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격립금(이하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고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격립금에서 인출한다.

7.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격립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 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text{■ 가중이동평균이율 }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다’ 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다’ 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한다.
-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8.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9. 기타

가.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고액계약할인에 관한 사항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1.0%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원

마. 장기납입보너스 적립에 관한 사항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60회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납입회차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61회차 이상 120회 이내	기본보험료의 0.5%
121회차 이상	기본보험료의 0.7%

바.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text{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text{MIN}\{10, \text{보험료 납입기간}\}$$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자. 만기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

- 1)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 2) '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3)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2)’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